#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유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701 발 의 년 월 일:2023년 03월 29일 발 의 자:황유정,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병윤, 이상욱, 이종태. 이종화. 이효워.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호정,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52명)

### 1. 제안이유

○ 무연고 사망자 부고 게시를 통하여 시민 및 사별자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장사업무안내」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대상과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대상이 상이하여 그 대상을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 또한 무연고 사망자 봉안시설인 '무연고 추모의 집'을 사별자가 애도할 수 있도록 봉안 시설을 개방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게시하고 공영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함(안 제3조제4항)
- 나. 서울시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호)
- 다. 장례 지원대상자에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 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 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6조제4호)
- 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 방할 수 있음(안 제8조제4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및「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게시하고 공영장례에 참여하고 자 하는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로 한다.

제5조 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를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망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다음"을 "다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1호~제3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 1. 시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2.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3.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4.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 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 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제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

- 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 ④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있다.

제9조제1항 중 "제6조 제1호 및 제2호"를 "제6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 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의 연고자"를 "제6조제3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제2조(정의)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 2. ----- 「장사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6호-----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 3. ----- 「국민기초생활 보 장법」, 「긴급복지지원법」및 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에 관한 조례 .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신 설>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 리 보장을 위하여 공영장례 일정 등 의 부고를 게시하고 공영장례에 참 여하고자 하는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연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 장 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 한다)을 5년마다 마다 수립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 수립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u>률」 제5조</u>에 따른 서울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 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 2. (생략)
-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
   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
   안
- 4. ~ 7. (생략)
- ③ (생 략)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공영장례 보장 <u>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u>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시장은 <u>사망시 시에</u> <u>주민등록을 둔 자로 다음</u>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 원할 수 있다.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1 <del></del> .
,
②
·
1. · 2. (현행과 같음)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의2
4.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제6조(지원대상자) <u>다음</u>
,
1. 시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
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제5조-----

1. 시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사망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무연고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관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 복지지원법」및「서울특별시 저소 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 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 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시행규칙 으로 정하는 사망자
- 3.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 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 로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 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신 설>

4. 제1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원내용) ① ~ ③ (생 략)

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2.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 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3.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 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독사 로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 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4.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 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인정하는 ----
- 제8조(지원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 11	서시
<시	~ >
\ 1	

④ 제1항과 <u>제3항</u>에 대한 지원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6조 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의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④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힐
	수 있다.
	⑤ 제2항
저	9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u>제</u>
	<u>6</u> 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② 제6조제3호 및 제5호의 지원대성
	자는 연고자